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
얼마나 빌릴 수 있나요?

Q1 매월 받는 연금액이 30만원인 노령연금 수급자가 의료비로 1,000만원이 필요한 경우 빌릴 수 있는 대부금액은?

A 개인별 한도액인 720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 대부금은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고 1,000만원) 이내 실 소요비용에 대해 대부
- 개인별한도액 720만원 = 30만원 × 24개월

Q2 최고 1,000만원까지 대부 가능한 수급자가 700만원만 대부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300만원 추가 대부가 가능한가요?

A 아니오. 개인별 한도액 중 실 소요비용에 대해서만 대부 가능하며, 한도액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상환할 금액이 남아 있다면 대부가 불가합니다.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
어떤 점이 좋은가요?

- 연대보증 및 담보가 없습니다.
- 대부금을 조기상환 하더라도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 상환원리금을 연금급여에서 공제신청 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공단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내용은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닥친 어려움 앞에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는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

청년 환우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 문의는?
☏ 국번없이 1355(유료)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를 방문해주세요.

부조리신고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 신고센터

NPS 국민연금공단 National Pension Service

NPS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Service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가 도와드립니다.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주택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대부제도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번없이 1355(유료)

신청대상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로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신청제외 대상

- 국민연금에서 지급 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외국인 및 재외동포/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 전인 자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 장애4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1급여이상 받는 자)
- 대부자 중 위·변조 등의 사유로 부당대부 처리되어 상환 완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대부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고 1,000만원)** 이내에서 실소요비용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당시 산정된 연금월액 기준

대부용도

- **주택 전·월세보증금** :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전·월세보증금
- **의료비** :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는 제외
- **배우자장제비** : 배우자 사망에 따른 장제비
- **재해복구비** : 본인 및 배우자의 재해복구비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증금 : **(신규)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필수서류(용도별)

공통서류	• 대부신청서, 대부약정서(공단 비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등(공단 비치) • 본인신분증(본인 지참)
용도별 기본서류	• 전·월세보증금 : 주택 전·월세계약서, 계약금 송금내역서 (확정일자, 주소전입,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미등기건물 및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인 경우, 건물 용도가 주택이 아닌 경우는 대부 불가 ※ 계약 사실 임대인 통화 확인 • 의료비 : 진료비(약제비)계산서·영수증* * 상세내용(급여 및 비급여항목 등) 기재된 영수증 • 배우자장제비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증명서, 장제비영수증 • 재해복구비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추가서류	• 대부 용도별 세부 조건에 따라 상담 및 대부 신청 시, **기본서류 외 추가서류가 안내됩니다.**

이자율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 기준으로 매 분기 변동
(연체이자율은 대부이자율의 2배)

* (참고) 근래 평균 대부이자율은 연1.12%~3.60% 수준

대부금 지급

대부 심사 후 대부 적격인 수급자에게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

※국민연금 전용계좌(안심통장) 등 압류방지통장 제외

※ 현금 지급 불가, 가족 등 타인명의 계좌 지급 불가

대부금 상환

상환기간

- 최대 5년 이내, 원금균등분할 방식
  * 거치기간(1년 또는 2년)을 선택 시, 최장 7년
  * 월 상환원리금은 연금월액의 1/20이하로만 설정 가능
  * 매월 연금지급일에 자동이체나 연금급여 원천공제로 대부금 상환(가상계좌를 통해 수시 상환 가능)

신청방법

방문 신청 전 콜센터(☎ 1355 **유료**) 또는 인근 지사에 문의하시어 대부용도, 신청자격, 신청기한 및 구비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이것만은 유의하세요!

- 위·변조 등 허위 신고, 임차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입신고 불이행 등이 발견되면 부당대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율 적용, 거치기간 없이 연금액 1/2 강제상환, 3년 대부 제한 등 벌칙적용)
- 신청 당시 대부가능금액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금 지급 후 추가대부가 불가하니 신청 시 유의하세요.